

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9. 2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.9.9.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9.9.10.

다. 상정일자 :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(2019.9.23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 : 청소행정과장 이주현】

가. 제안이유

상위 법령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, 자원재활용 및 1회용품 제로화 추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물품 제작·배포 근거를 마련하여 1회용품 제로화 및 구민 재활용 의식 함양을 고취하고자 조례 일부개정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 삭제에 따른 조례 개정 (안 제2조제1항)
- 조례에서 정하는 구민의 대상 한정(안 제5조제1항)
-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·배포 근거 조항 신설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)
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위반에 따른 준용규정 삭제(안 제11조)
-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- 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·배포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7조의 조문 삭제로 관련조문을 개정하고, 제6조(교육·홍보)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를 따라야 함에도, 과태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는 제11조(준용규정)를 삭제하는 내용임.
- 검토의견으로는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교육·홍보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위반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쓰레기문제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마포구가 선도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및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교육·홍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으로 조기교육 효과가 있는 어린 시절부터 재활용 분리수거와 1

회용 플라스틱 사용안하기 등이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9-122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9.

발 의 자 : 김종선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1회 용품의 성격이 있거나 홍보효과가 미약한 홍보물품을 삭제하고자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제6조 제2항 중 “칫솔, 부채, 자” 를 삭제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 제2항 중 “칫솔, 부채, 자” 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6조(교육·홍보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홍보를 위하여 <u>장바구니, 다회용 컵, 냄비받침, 칫솔, 부채, 자, 달력,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</u>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교육·홍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장바구니, 다회용 컵, 냄비받침, 달력,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</u> ----- -----.</p>